

- ▶ 2026년 1월 1일 이후 변동사항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.
- ▶ 지원내용은 변경 될 수 있으니, 제도 이용 시 관할 보호(지)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좀 더 자세한 내용이 알고 싶으세요?

홈페이지(www.mpva.go.kr)에서 최신의 정확한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🔍 검색창에 '국가보훈부 나만의 예우'를 검색해보세요.

※국가보훈부 '나만의 예우'에서는 나의 민원행정정보조회 민원서비스 지원내용 등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(로그인 필요)



보훈가족 심리재활 상담

보훈가족 마음치유센터 : ☎ 02-2225-2550

- 부산 : ☎ 051-601-6762~3
- 대전 : ☎ 042-605-0732~3
- 대구 : ☎ 053-630-7127~8
- 광주 : ☎ 062-602-6615~6
- 인천 : ☎ 032-363-9893~4

국가보훈대상자 무료법률구조 지원

기존 중위소득 125% 이하 국가보훈 대상자 또는 수권 유족(보훈보상대상, 지원대상 포함)에게 무료로 민·가사, 형사, 행정소송 지원

▶ 대한법률구조공단 ☎132번으로 문의

1:1 보훈상담 서비스를 받고 싶으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

1577-0606

대부금 상환, 잔액 등이 궁금하시다면?

전국 어디서나

1577-0301

광복회 전화번호는? 전국 어디서나 02-780-9661~2

보훈단체에 가입하시면 '회원 간 유대관계 형성', '보훈부 및 지자체 등의 지원제도 안내', '보훈행사 참여를 통한 자긍심 고취' 등 다양한 혜택이 있습니다.

국가유공자를 위한 기부 '모두의 보훈 드림' 누리집

(www.donate.bohun.or.kr)

후원하신 기부금은 이렇게 사용 됩니다.



자립기반

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의 주거, 교육, 재해복구 등 안정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.



예우문화

국가유공자들의 헌신·희생에 감사와 보답을 전하는 예우문화를 만듭니다.



노후복지

나이가 많으신 국가유공자 등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을 돕습니다.



의료재활

중상이 국가유공자에게 월체어 등 보조기를 지원하고, 가족상실 충격 등 심리재활을 지원합니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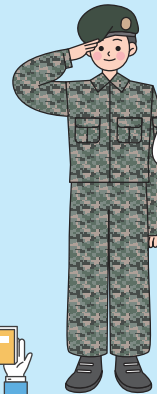
「모두의 보훈 드림」 홈페이지 QR코드

QR코드를 사용하시면 누구나 쉽고 편하게 기부 참여가 가능합니다.



2026 보훈가족을 위한

독립유공자 및 유족 보훈제도



모두를 위한 '특별한 희생에, 특별한 보상'으로 보답하겠습니다.

국가보훈부는 희생이 존경으로, 예우가 감동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가유공자 및 보훈가족에 대한 보상에 최선을 다할 뿐 아니라, 모든 세대가 공감하고 함께 실천하는 보훈문화를 조성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.



- 보훈급여금 지급** 04
매월 15일 보훈급여금을 지급해 드립니다.
- 특별지원** 05
대상에 따라 특별예우금, 제수비, 가계지원비 등을 지원합니다.
- 차량·교통지원** 06
통행료 면제 등 차량지원 및 철도·버스 등 교통시설 이용을 지원합니다.
- 교육지원** 09
수업료, 학습보조비, 장학금 등을 지원해 드립니다.
- 취업지원** 10
가점 부여, 취업과 직업교육훈련 등을 지원합니다.
- 의료지원** 12
보훈병원 및 위탁병원 진료와 보철구 등을 지원합니다.
- 대부지원** 14
아파트 특별공급 및 주택·농토구입, 생활안정대부를 지원합니다.
- 복지지원** 16
안락한 노후를 위한 장기요양급여, 재가복지서비스 등을 지원합니다.
- 기타지원** 18
각종 세액감면과 증명서 발급 수수료, TV수신료, 통신요금 감면 등을 지원합니다.
- 사망시 예우** 20
사망시 국립묘지 안장 또는 묘비제작비 등을 지원합니다.

보훈급여금 지급 대상인 분께는 매월 15일, 제출하신 거래은행 계좌에 보상금을 입금해 드립니다.

▶ 15일이 휴무일인 경우에는 전일 입금

▶ 보상금 지급대상은?

- 보상금은 [①본인 ②배우자 ③자녀 ④손자녀(1945.8.14.이전에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1명/1945.8.15.이후에 사망한 독립 유공자의 유족으로 최초 등록당시 자녀까지 모두 사망한 경우 및 생존자녀가 있었으나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사망한 경우 손자녀 1명) ⑤며느리(1945.8.14.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] 까지만 승계 지급

※ 그외 유가족은 보상금 비대상임. 단, 최초 등록 당시 자녀 손자녀까지 사망한 경우 가장 가까운 직계비속 중 1명을 손자녀로 인정('12. 7. 1. 자 시행)

동 순위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

- ① 동순위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보상금을 받을 자로 지정된 유족
- ②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(다툼이 있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 심의 후 결정)
- ③ 연장자 우선(단, 손자녀의 경우에는 생활수준을 우선 고려하여 지급)

▶ 보상금 월 지급액은? (2026년도)

(단위 : 원)

보상금	건국훈장 1~3등급	건국훈장 4등급	건국훈장 5등급	건국포장	대통령표창
애국지사	7,924,000	4,219,000	3,336,000	2,390,000	1,571,000
배우자	3,511,000	2,586,000	2,106,000	1,479,000	1,000,000
유족	3,040,000	2,533,000	2,057,000	1,468,000	980,000
생활조정수당	가족 3인 이하 242,000~311,000				
	가족 4인 이상 300,000~370,000				

- 생활조정수당은 생활이 매우 곤란한 분께만 지급되며, 신청에 의한 생활수준조사 후 매월 15일에 보상금에 가산하여 지급합니다.
※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급여, 의료급여 수급자는 조사생략 가능

▶ 보상금 받는 통장을 바꾸고 싶는데...

- 보상금을 받고 계신 분이 신분증을 지참, '예금계좌등 변경신청서'를 제출하시면 됩니다.
- 단, 행정정보 공동이용 미동의시에는 통장 사본을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신청서를 제출한 다음 달부터 변경통장으로 입금
- 보훈급여금 압류 방지 전용 '호국보훈지킴이 통장' 안내
- (발급가능 금융기관) 10개 은행(우체국, 국민은행, IBK기업은행, NH농협은행, KDB산업은행, 우리은행, 새마을금고, 신용협동조합, 신한은행, 대구은행)에 국가보훈등록증(국가보훈부 발급)을 제시하여 압류 방지 전용 통장 개설 후 가까운 보훈관서를 방문하여 예금계좌 지정 또는 변경 신청
- 단, 잘못 지급된 보훈급여금 등을 국가보훈부에서 환수하는 등의 경우에는 압류 가능

▶ 애국지사님께 특별예우금을 드립니다

- 매월 보상금 지급기준일(15일)에 준하여 계좌입금 해드립니다.

- 특별예우금 월 지급액은?

(단위 : 원)

예우금	건국훈장 1~3등급	건국훈장 4등급	건국훈장 5등급	건국포장	대통령표창
금액	4,650,000	3,840,000	3,450,000	3,150,000	3,150,000

※ 대한민국 국적을 상실하신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습니다.

▶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 1인에게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

- 광복 이후 사망한 독립유공자의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나이가 많은 자 1인에게 매월 보상금 지급 기준일(15일)에 가계지원비를 지급합니다.
- 지급금액은 월 400,000원으로, 제출하신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
단, 2005.1.1.이후 유족 중 보상금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는 제외됨
- 지급취지는?
- 독립유공자의 사망시점을 광복이전 이후로 구분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하는데 대한 차등을 다소나마 해소하기 위한 제도
※ 생활지원금과 중복 불가

▶ 독립유공자 제수비가 지원됩니다

- 순국선열 애국지사의 수권 유족에게 실제 기일이 속하는 달의 1일에 제수비를 지급합니다. (단, 수권자가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토록 요청한 경우, 제사 주관자에게 지급)
- 지원금액은 350,000원으로, 제출하신 거래은행 통장으로 입금
- 신청서 제출 이후에 해당하는 기일부터 적용

▶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합니다

- 신청대상은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자녀 및 손자녀
- 신청기관 : 주소지 관할 보훈청 보상과
- 지급대상 : 신청자 중 소득 재산조사 결과 지급 기준 해당자
- 지급금액
· 기초생활수급자(생계급여, 의료급여에 한함), 생활조정수당지급자 : 월 478,000원
· 기초연금수급자(단독·부부세대), 소득·재산이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: 월 345,000원

꼭 관할 보훈청에 알려주세요.

- 본인·배우자·자녀·손자녀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가 발생한 경우
- 사망 또는 국적 상실, 국적 회복
- 성명·주민등록번호 변경 또는 1년 이상 행방불명인 때
- 독립유공자의 결혼·재혼·이혼(손자녀 출생 등으로 친족관계가 발생·소멸될 때
- 독립유공자 또는 수권 유족의 주소 변경, 영주권 취득

▶ 애국지사님께만 지원되는 내용입니다.

▶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데 수혜는?

- 애국지사 본인 또는 주민등록상 함께 기재된 가족과 공동명의 차량 1대에 대해 도시철도 채권 매입이 면제됩니다.
 - 면제차량 :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자동차, 7인승 이상 승용자동차, 소형 승합자동차, 소형 화물자동차, 소형 특수자동차 중 1대

▶ 통합복지카드는 어떤 혜택이 있나요?

-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.
 - 면제차량 : 승용차(배기량 제한없음), 12인승 이하 승합차, 1톤이하 화물차, 전기·수소차 중 1대
 - 애국지사 탑승 시 고속도로 요금소에 통합복지카드 제시
- ▶ 감면행복단말기는 한국도로공사 콜센터(1588-2504) 또는 제조사 휴먼케어(1688-3017) 및 애플폰(1544-8202)을 통해 구입하여 가까운 보호청에서 지문인식 등록 후 사용 가능
- LPG 차량은 가스충전요금이 할인됩니다.
 - 통합복지카드로 가스 충전시 월 300ℓ 까지 세금인상분 지원(세금 인상, 인하여 따른 변동 있음)
 - ※ 50ℓ 추가 신청 가능한 경우 : 사업장·직장·학교가 자택에서 왕복 80km이상인 경우(1일 기준)
 - LPG차량 사용 중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시면 복지카드 사용 즉시 정지
- 전국의 시내버스·지하철 이용이 가능합니다.
 - ※ 시내버스 승차요금 인식 → 국가보훈부가 카드사와 사후 정산
- 친환경차량(전기·수소차)은 충전비와 구매보조금을 지원해드립니다.
 - 충전비 : 월 29,000원 한도 내 (복지카드로 충전시 지원)
 - 구매보조금 : 2022년 1월 1일 이후, 신규 등록된 차량에 대해 100만원 지원
 - ※ 중고 구입이 아닌 신차 구입시 지원, 차량 최초등록일로부터 90일 이내 신청

▶ 통합복지카드를 발급 받으려면...

- 독립유공자 신분증 및 사진(3.5×4.5cm) 1매를 준비하여 가까운 보호청에 신청하시면 통합복지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.(30일 정도 소요)
 - 신용카드 기능(시중 모든 은행계좌 가능) / 직불카드 기능(신한은행, 우체국계좌 만 가능)

LPG·전기·수소차량 이용시 주의사항

- 애국지사께서 이용하시는 LPG·전기·수소차량에 대하여 세금인상액 또는 충전비를 지원하는 것
 - ※ 본인만 사용해야 함
 - ※ 유공자 사망, 세대분리, 해외체류, 차량매각, 타인대여 등 부당사용이 확인될 경우 지원정지 및 부당사용금액 환수

▶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한가요?

- 가까운 보호청에 자동차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표지를 즉시 발급해 드립니다.
 - 독립유공자 또는 주민등록상 동거가족(사위·형제·자매 포함)과 공동명의 또는 동거가족 소유차량 1대
- 자동차표지가 부착된 차량에 애국지사가 탑승한 경우 장애인 주차구역에 주차가 가능합니다.

- ※ 보철용차량 사용 중 국가유공자께서 작고하시면 가까운 보호청에 꼭 신고해 주시고, 주차표지를 반납하셔야 합니다.
 - * 통합복지카드는 신한카드 고객센터(☎ 1544-7000)에 해지신청 해주세요.
- ※ 보철용차량 등록은 동주민센터와 중복 신청이 안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- ※ 비영업용 보철용차량 및 사업용 개인택시(보철용차량 등록하여 자동차표지 발급 차량)의 경우 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(정기 종합) 수수료가 80% 할인됩니다.



▶ 애국지사님은 아래와 같은 지원이 있습니다.

▶ 수권 유족은 국내선 항공기만 30% 할인

▶ 아래와 같이 이용하십시오

수송시설	이용방법	지원내용	감면율
기차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→ 승차권 교부	·KTX, SRT 등 전 차종 이용가능 ·보호자 1인 포함 ·연간 무임 6회(승차일 기준), 50% 할인(무제한) ·특실 제외	무임 6회 50% 할인 (무제한)
지하철	·복지카드 사용 ·무인 발권기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접촉시켜 1회용 우대권 발급 (보증금 500원 필요)	·보호자 1인 포함	무임
공항철도	·복지카드 사용 또는 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→ 승차권 교부	·보호자 1인 포함 ·직통열차는 제외	무임
시내버스 (농어촌)	·복지카드 사용	·광역, 좌석, 마을버스 제외 ·보호자 1인 포함	무임
시외버스	·매표창구에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(골드색) 제시	·시외버스 70% 할인 ·농어촌버스 무임 ·보호자 1인 포함	70% 할인
고속버스 (우등고속)	·매표창구에 수송시설용 국가유공자증서(골드색) 제시	·보호자 1인 포함 *프리미엄 고속버스 제외	50% 할인
국내 여객선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*중이승선이용권 패지	·육지 거주자 연 6회 ·도서 거주자 연 12회 ·보호자 1인 포함	무임
국제 여객선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 제시	·한국 ↔ 중국 및 일본간 일부 선박회사 ·한국에서 발권한 승선권에 한정함 ·일부 노선의 경우 선사별 차이	객실요금 20% 할인
국내선 항공기	·매표창구에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	·대한항공, 아시아나 동반가족 1인 포함(애국지사만) *저가항공사(제주항공, 이스타항공 등) 할인을 별도 확인 필요	50% 할인 (애국지사) 30% 할인 (수권 유족)

※ 부정 사용 확인 시 관련 규정(여객운송약관 및 국가유공자 예우법, 보훈보상대상자법)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될 수 있음.

▶ 독립유공자, 자녀, 손자녀의 교육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
▶ 자녀, 손자녀가 중·고등학교에 입학합니다

- 교육비 지원 대상자는 배정받은 학교에 별도 절차 없이 등록금이 면제됩니다.
 - 보훈청에서 전산자료를 근거로 교육청에 교육지원대상자 통보
- 가족 추가, 학교 전학 등 변동사항 발생 시에는 '교육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입학(전학) 또는 재학 중인 학교 행정실에 제출하세요.
- 학습보조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
 - 연간 지급액 : 중학교 124,000원, 고등학교 144,000원(인문계), 186,000원(전문계)
 - 지급시기 : 4월15일, 10월15일에 나누어 지급
 - 고등학교의 경우는 수업료, 학교운영지원비가 면제됩니다.

▶ 대학교는 어떤 지원이 있나요?

- 대학별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.(일반대학 미실시)
 - 가까운 보훈청에서 '대학입학 특별전형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원서접수 시 첨부
 - 국가보훈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교육지원 > 대학별 특별전형계획을 참고하시기 바라며, 자세한 사항은 해당 대학에 문의하세요.
- 합격하셨다면, '대학수업료등면제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대학교 장학과 (또는 행정실)에 제출하세요. 등록금 면제 등의 수혜가 있습니다.
 - 증명서 발급 : 가까운 보훈청 또는 주민센터나 인터넷 '정부 24'에서 발급
 - 재학 중 신규로 독립유공자(유족)가 되었을 경우에도 절차 동일
- 등록금(수업료)이 면제됩니다.
 - 일반대학교의 등록금(수업료) 면제기간

2년제 대학	3년제 대학	4년제 대학	5년제 대학	6년제 대학
4학기	6학기	8학기	10학기	12학기

- 수업연한이 없는 학점인정 교육기관의 면제학점

구분	2년제	3년제	4년제
면제학점	84학점 이하	126학점 이하	168학점 이하

※ (손)자녀는 직전학기 성적 70점 이상인 경우(입학학기 제외)만 면제

▶ 특수교육대상자(장애인) 및 보훈장학금(특수교육) 신청은 관할 보훈청에 문의

자녀, 손자녀의 취업을 도와드립니다.

▶ 채용시험 시 가산점(10% 또는 5%)을 받을 수 있습니다

- 가까운 보훈청 방문 또는 정부24(www.gov.kr), 읍·면·동주민센터의 어디서나 민원에서 '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'를 발급받아 제출
 - 기업체, 초·중등교육법, 유아교육법에 의한 교사 등의 채용시험 : 원서접수 시 첨부
 - 6급 이하 공무원 등 시험 : 답안지의 취업지원대상자 가산 표기란에 표시, 합격자 발표 후 제출(반드시 채용시험 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, 증명서 제출이 생략되는 경우가 있음)
- 가점
 - 순국선열 유족, 보훈청 등록 이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 : 10%
 - 애국지사 가족, 보훈청 등록 이후 사망한 애국지사 유족, 지정취업 대상자 : 5%

▶ 취업이 어려우시다면...

- 이력서(사진 부착) 및 자기소개서 1통, 취업관련 자격증 사본 등을 준비
- 취업희망업체를 관할하는 보훈청 방문 또는 온라인 접수
 -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(<https://job.mpva.go.kr>)으로 신청 가능
 - 기업체 직종 확보 후 자격요건 등을 고려, 추천을 통해 직장을 알선
 - ※ 자녀·손자녀는 39세까지 신청 가능하며, 가구당 3인 이내 알선 가능
 - 운전직·방호직 등 일부 직렬 공무원을 희망하는 분은 자격요건 등에 따라 보훈대상자 특별채용 시 추천



▶ 취업을 위해 직업훈련이 필요합니다

- 가까운 보훈청을 방문, '우선직업능력개발훈련 대상자 추천서'를 발급받아 해당 훈련 기관에 제출하시면 우선선발 대상으로 입소하실 수 있습니다.
 - 공공직업훈련기관 : 기능대학,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, 장애인고용공단 직업능력개발원, 직업전문학교 등
 - ※ 우선선발 모집 정원 및 선발 방법은 개별 모집 공고 확인 필
- 공공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을 받으면, 월 4만원의 장려금도 지급합니다.
 - 관할 보훈청에서 해당 훈련기관에 확인하여 매 분기 말 교육훈련 받는 분의 은행 계좌로 입금
 - ※ 기능대학의 학위과정 수료자 및 140시간(주20시간) 미만 과정 수료자는 지급대상 아님
 - ※ 법정취업자의 경우 지원 불가
 - ※ 지원 횟수 3회 (동일 과정 및 과목 지원 불가)

▶ 취업능력 향상을 위해 학원에서 수강하고 싶어요

- 취업수강료 지원을 희망하는 분은 국가보훈부 취업정보시스템 (<https://job.mpva.go.kr>)에서 취업수강료 (지원과정(목) 및 지정교육기관) 확인 후, 교육기관에 수강료 전액을 납부하고 수강 등록 후, 관할 보훈청에 '취업능력개발 비용 지원 신청 및 확인서, 개인정보사건동의서, 서약서, 영수증'을 먼저 제출하세요. (수강기간이 종료된 경우라도 수강종료일로부터 1년까지는 신청 가능)
- 신청대상 및 예산범위 등을 고려하여 지원 대상여부 결정 → 관할 보훈청
 - ※ 타부처(자치단체 포함) 중복지원 불가 (예 : 내일배움카드)
- 학습 진도율 80% 이상(수강기간 2/3 이상) 이수한 후 보훈청에 취업수강료 청구 (구비서류 : 수강완료 사실확인서, 응시확인서류, 지정계좌 신청 및 동의서, 통장 사본)
- 보훈청에서 수강신청자 본인명의 계좌로 수강료(70%) 입금
 - 1인당 지원한도액 : 국가유공자 등 본인 총 3,000,000원 (연간 1,500,000원)
 - 유가족 총 1,500,000원 (연간 750,000원)
 - ※ 단, 법정취업자, 수강료 부정수급자 등은 지급된 수강료 환수 및 지원대상 제외
 - ※ 수강료 외 시험응시(수수)료, 검정(수수)료, 교재비는 미지원
 - ※ 경비신입교육(일반, 특수)과정은 수강료 100% 지원

취업정보시스템 이용 안내

- 취업정보시스템을 통해 보훈관서 채용정보, 취업수강료 지원, 이력서 작성 기법 등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오니, 많은 이용 바랍니다.
- ☎ 사이트 주소 : <https://job.mpva.go.kr>

▶ 보훈병원을 이용하세요

- 진료 접수 시 신분증 또는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(단, 치아보철, 성형 등은 제외)
 - 독립유공자 국비진료, 보훈부에 등록된 유가족 60% 감면
- 또한, 애국지사님의 활동을 보조하기 위해 보훈병원 보장구 센터를 통해 전동 휠체어, 수동휠체어, 욕창방석, 자세유지 보조기, 사위형휠체어 등 5종의 보철구도 무료로 지급합니다.
 - 지급절차 등 자세한 내용은 관할 보훈청 복지과 보철구 담당에게 문의
- 보훈병원 주소 및 전화번호
 - 중앙보훈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14)
 - 부산보훈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 051-601-6000)
 - 광주보훈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2-6114)
 - 대구보훈병원 : 대구시 달서구 월곡로 60(☎ 053-630-7000)
 - 대전보훈병원 : 대전시 대덕구 대청로 82번길 147(☎ 042-939-0114)
 - 인천보훈병원 : 인천시 미추홀구 인주대로 138(☎ 032-363-9800)
 - 중앙보훈병원 서울요양병원 : 서울시 강동구 진항도로 61길 53(☎ 02-2225-1123)
 - 부산보훈병원 부산요양병원 : 부산시 사상구 백양대로 420(☎051-601-8600)
 - 광주보훈병원 광주요양병원 : 광주시 광산구 첨단월봉로 99(☎ 062-604-5600)

▶ 가까운 병원에서는 진료 받을 수 없나요?

- 애국지사 본인은 지정된 위탁병원에서 국비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 - 지원 범위 : 건강보험 급여부분과 비급여 일부 항목 (초음파 검사, MRI, 건위소화제)
 - ※ 75세 이상 보상금을 수령하는 선순위유족은 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하여 건강보험 급여부분의 60% 감면진료(건강보험 비급여 항목 및 약제비 제외)
-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> 위탁병원명단이나 보훈상담센터(1577-0606)에서 가까운 지정병원 확인 후,
- 위탁병원 진료 접수 시, 신분증을 제시하고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.

▶ 응급상황 발생으로 일반병원에서 진료를 받았는데...

- 애국지사님의 생명이 위독한 경우 등 응급상황이 발생하여 보훈병원이나 위탁병원까지 이동이 불가능하여 일반병원 응급실을 이용했다면,
- 반드시, 주소지 관할 보훈청에 방문 또는 전화로 입원 사실을 알려야 하며, 입원한 날부터 13일 이내에 연장신청 해야 합니다.
 - ※ 미연장 시 최초입원일로부터 14일이 되는 시점까지만 지원
- 입원한 날로 3년 이내에 관련 서류를 보훈청에 제출
 - 제출서류 : 진료비 영수증, 진료비 상세내역서, 응급실 기록지, 진단서 등
- 제출서류 등으로 보훈병원의 심사를 거쳐 진료비를 반환해 드립니다.

▶ 보건소에서도 진료비를 감면해드려요

- 독립유공자 또는 유가족이 보건소 진료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면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본인부담금의 전액 또는 일부가 면제됩니다.

▶ 생계곤란으로 병원비가 부담됩니다. -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

- 생활이 매우 곤란한 가구에 대하여는 1종 또는 2종 의료급여증을 지원하여 병원비 부담을 덜어 드립니다.
- 의료급여증 발급대상자는 생계곤란 여부, 지침 등에 의거 연중 수시로 선정됩니다.

▶ 시립병원도 무료 진료가 된다던데...

- 의료급여증 지원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독립유공자(수권 유족) 및 그 배우자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따라 무료 진료됩니다.
 - ※ 건강보험가입 필수, 일부 지자체는 수권자 본인에게만 발급
- 보훈청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무료진료증 발급대상자 명단을 통보하면,
- 독립유공자(수권 유족) 거주지 관할 시·군·구청 보건정책과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무료진료증을 발급합니다. (건강보험 가입자에 한함)
 - 무료진료 범위는?
 - 시립병원 등 지방자치단체 지정병원 이용 시 요양급여 항목의 본인 부담금과 처방전 및 약제비 등을 지자체 조례 범위 내에서 지원(진료비용은 지방자치단체 부담)
 - ※ 국가보훈부 홈페이지(www.mpva.go.kr) > 예우보상 > 지원안내 > 의료지원 및 위탁병원 > 독립유공자 무료진료병원 및 약국명단 확인



▶ 아파트 특별공급(분양, 임대)을 받고 싶습니다

- 신청자격은?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등에 따라 아래 사항에 모두 해당하는 분
 - 독립유공자 본인 및 수권 유족, 영주귀국 정착금 지급대상이 되는 유족 세대주, 독립유공자의 유족인 자녀 중 생활지원금을 받는 자
 - 아파트 특별공급 지원 후 만 3년이 경과한 분
 - 신청일 현재 성년자인 무주택세대 구성원(무주택세대 구성원 요건은 보존관서에 문의)
 - ※ 특별공급(분양 또는 분양전환공공임대)을 한차례라도 받은 분은 「주택공급에 관한 규칙」 제55조에 의하여 아파트 분양·분양전환공공임대 지원 대상에서 제외

○ 주소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세요

- 주택우선공급신청서(신청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- 개인정보동의서(동의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- 추천서약서(서약서 서식은 신청 장소에 비치) 1통
- 무주택입증서류 : 현주소지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(전유부) 1통
- 가족관계증명서 (상세) 1통
- 배우자 및 본인·배우자의 동거가족 도장
- ※ 매년 1월 초 접수기간(나라사랑신문 공고 확인 요망) 이후 신청시 순위부 마지막 순서로 배정
- ※ 전년도 신청자 중 알선받지 못한 분은 재신청할 필요 없음

○ 신청 후에는?

- 배정기준(무주택 기간, 학생 및 공헌도, 전년도 미지원 여부 등)에 따라 당해년도 우선순위를 결정
- 국가유공자용 특별공급 물량이 배정되면 해당 아파트 신청자 중 우선순위부 순서대로 추천
- ※ 특별공급 신청 시 기재하신 휴대폰으로 확보된 주택의 내용을 문자메시지로 알려드립니다

▶ 긴급자금이 필요한데... -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

- 전국 국민은행, 농협은행의 “나라사랑 대출창구”에서 대출을 해드립니다.
 - 주택구입(신축)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로 주택을 구입(신축)하는 경우
 - 주택임차대부 : 신청일 현재 무주택세대 구성원으로 신청인 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의 전·월세 임대차계약을 하는 가구
 - 주택개량대부 : 신축 5년 이상 경과된 소유주택을 개보수하려는 가구
 - 사업(창업)대부 : 본인, 배우자 또는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사업 중이거나 사업을 운영하고자 하는 가구
 - 농토구입대부 : 본인명의(배우자 공동명의 포함) 농토구입 예정자로 본인 또는 배우자, 1년 이상 동거하고 있는 직계 존·비속이 해당지역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는 가구
 - 생활안정대부 : 생활비, 재해복구비, 의료비, 경조비, 보철용차량 구입 등 가계자금이 필요한 가구
 - ※ 대부 신청 관련 상담 및 구비서류 안내는 국민은행, 농협은행 전국 지점의 “나라사랑 대출 창구”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대부종류 및 조건

구분	대부한도액	연이율	상환기간	담보조건
아파트 분양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분양 아파트 (후취담보시 군인연금, 보험급여금, 연대보증인·직접대부 시)
주택구입(신축)	3,000~6,000만원	연 2.5%	20년균등	구입(신축)주택
주택임차	2,000~4,500만원	연 2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군인 연금)
주택개량	8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군인 연금)
농토구입	3,000만원	연 2.5%	3년거치 10년균등	구입농토
사업(창업)	2,000만원	연 3.5%	7년균등	부동산·보험급여금(군인 연금)
생활안정 (보철용 차량 구입시)	300만원 (1,000만원)	연 2%	3년균등 (보철용 차량 5년 균등)	부동산·보험급여금(군인연금)·연대보증인(직접대부 시)

- ※ 보철용차량 구입 대부는 독립유공자 본인만 가능
- ※ 보증보험은 위탁은행 대부시에만 담보 가능(위탁은행 문의)
- ※ 보험급여금(군인연금)을 담보로 제공하는 생활안정대부(한도300만원)에 한하여 온라인신청 도입(24.1.-)
 - 국민은행(KB스타뱅킹) 또는 농협은행(NH뱅킹) 앱을 통해 신청

- 국민은행, 농협은행 “나라사랑 대출”이 불가능한 신용관리대상자는 관할 보존청에 문의하세요.(예산 범위 내에서 보존청에서 직접 대부 지원)

▶ “나라사랑 대부금”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면 세금감면이 된다던데...

- 대부받은 국민은행, 농협은행 지점(보훈청 대상자는 관할 보존청)에서 ‘조세면제(감면)증명서’, ‘대부재산증명서’를 발급받아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제출
 - 취득세 면제(대부금으로 취득하는 경우에 한함)
 - ※ 취득의 기준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 직접 문의 필요
 - 농토 : 대부금액에 대하여 감면
 - 주택 : 전용면적 85㎡ 이하인 경우 취득금액에 대해 면제
전용면적 85㎡ 초과인 경우 대부금액에 대해서만 감면

▶ 가정에서 복지서비스를 받고 싶습니다.

- 관할 보훈청에 '보훈재가복지서비스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 : 독립유공자, 배우자, 자녀, 손자녀
 - 선정기준 :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하고,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로 생활정도가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※ 생존 애국지사 및 애국지사 수권 배우자는 생활수준과 관계없이 지원 가능
 - ※ 제외대상 : 국고사업에 의하여 동일한 또는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분 (예 : 장기요양급여 또는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)
 - 대상결정 : 생활수준조사 등을 통해 적격여부를 심사 후, 서비스 지원대상자 결정
 - 서비스지원 : 재가보훈실무관이 가정을 방문하여 가사활동·정서지원 등 재가서비스 제공
 - ※ 주1~2회(1회 2시간 서비스 제공)

▶ 노인요양시설을 이용하고 싶어요

- 관할 보훈청에 '요양지원 보조금 지급 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(아래 사항이 모두 해당하는 분)
 -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
 -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요양등급 1~5등급 받고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제공 받고 있는 분
 -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한 생활수준에 해당하는 분
 - ※ 생존 애국지사와 애국지사의 수권 배우자는 생활등급에 관계없이 지원 가능
 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요양원 입소확인서 또는 요양기관 이용계약서 사본 1부
 - ※ 기타 생활수준조사를 위한 동의서 등 필요
 - 지원대상자로 결정되면,
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요양급여비 본인부담액을 통보 받아, 매월 15일 본인 계좌로 환급
 - 독립유공자 : 본인부담액의 80% 지원
 - 독립유공자의 배우자 : 본인부담액의 40% 지원(본인일부부담금 감경대상자인 경우 60%)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은 제외
 -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 이용분부터 지원

▶ 장기요양 필요로 보훈요양원에 입소하고 싶습니다

- 보훈청을 거치지 않고 보훈요양원에 직접 신청합니다
 - ※ 수원보훈요양원 ☎ 031-240-9000, 광주보훈요양원 ☎ 062-602-5800
 - 김해보훈요양원 ☎ 055-340-8585, 대구보훈요양원 ☎ 053-606-3000
 - 대전보훈요양원 ☎ 042-829-3000, 남양주보훈요양원 ☎ 031-579-7000
 - 원주보훈요양원 ☎ 033-769-2000, 전주보훈요양원 ☎ 063-220-0777
- 신청대상 :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의 요양등급 판정자 중 장기요양인정서 상의 "시설급여"에 해당하는 분
 - ※ 주간보호는 "재가급여" 해당자도 가능
- 구비서류
 - 국민건강보험공단 발행 장기요양인정서 및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 각 1부
 - 주민등록등본 1부(입소자와 보호자 각 1부)
 - 전염병 질환 여부를 알 수 있는 건강진단서 1부(보건소, 보건의료원, 병원 등 발행)
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및 의료급여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- 보훈요양원에 입소하시면, 요양급여비 중 일부 감면
 - 독립유공자 본인 : 본인부담액의 80%, 배우자 : 본인부담액의 40%(본인일부부담금 감경 대상자는 60%) 감면
 - ※ 식재료비, 간식비, 상급 침실료 등 비급여 부분 제외

▶ 부양할 사람이 없어 보훈원에 입소하고 싶어요

- 보훈원에 '보훈원 입소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 : 독립유공자 또는 보상을 받는 수권 유족으로 부양의무자가 없는 분 (남자 65세 이상, 여자 60세 이상)
 - 가족관계증명서상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행방불명 등인 경우에는 입증서류 필요
- 입소대상 여부는 보훈원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
- 보훈원에 입소하시면,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, 사망 시 국립묘지 안장 등 지원
 - ※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광고산로 97 ☎ 031-250-1521

▶ 부양할 사람과 집이 없어 복지타운에 입주하고 싶은데...

- 보훈복지타운에 '복지타운 입주신청서'를 제출하세요
 - 신청대상 : 민법상 성인인 독립유공자 및 유족 중 무주택자로, 일상적인 신변관리가 독자적으로 가능한 독신 또는 부부세대
 - ※ 본인 및 배우자 명의의 주택이 없어야 함
- 입주대상 여부는 복지타운에서 결정하여 알려드립니다. ☎ 031-250-1562
 - 임대보증금 및 월 관리비 : 8평형(독신세대)은 150만원 * 관리비 별도
 - 13평형(부부세대)은 250만원 * 관리비 별도

▶ 천재지변·화재 등으로 재산 및 인명 피해를 입었어요 -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

- 관할 보훈청 복지과에 재해발생 신고
 - 보훈청에서 행정안전부의 '재난관리업무포털'로 피해사실 확인 및 신청자 '재해발생신고서', '피해사실확인서' 제출 (소방서, 경찰서 또는 시·읍·면·동주민센터에서 발급)
- 지급기준 해당여부 확인 후 재해위로금 지급

▶ 보훈후양원 및 협약 콘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

- ▶ 국가보훈등록증 제시 필요, 협약콘도 및 이용방법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국가보훈부 홈페이지 > 예우보상 > 기타지원 > 협약콘도 이용안내 참조

협약콘도(명)	내용	예약문의
보훈후양원	충주 보훈후양원 연중 이용 가능	☎ 043-854-2121 또는 http://condo.bohun.or.kr 전화(☎ 1588-4888) 또는 홈페이지 https://www.sonohotelsresorts.com
소노호텔&리조트(前 대면)	15개 지역(패밀리 및 스위트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주말, 연휴, 성수기예외 제외) * 잔여객실에 한해 협약 요금으로 이용 가능	☎ 52099159 * 이용권 번호 객실(룸온리) : 52099159 * 소노리조트(소노캠비비디/경주, 풀비디) 객실(룸온리) 52099324
한화리조트	12개 지역(20평형대 디럭스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(잔여객실에 한함) * 성수기는 잔여 객실이 있을 경우 이용 가능	홈페이지 예약 www.hanwharesort.co.kr * 고객센터 : 11806536
일성리조트	7개 지역(19~40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(잔여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제주비치는 금·일 주말요금 적용 * 부곡은 상시영업이 아니므로 예약가능 여부를 해당 지점에 사전 확인(☎065-536-9870) * 금, 토, 공휴일 전일 예약은 가능하나, 별도 요금 적용 * 자세한 이용사항은 업체 문의	전화예약(☎ 1566-8113) 또는 예약사이트 www.ilsungresort.co.kr * 법인번호 : 62239063
호반호텔앤리조트	3개 지역 * 연중(주말, 연휴 제외 /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) * 아일랜드리조트(안동도), 포레스트리조트(제천), 레스트리조트(제천) 주말, 연휴 예약불가 * 자세한 이용사항 업체 문의	홈페이지 예약(www.resom.co.kr) * 리솜 홈페이지(resom.co.kr) 접속 후 우측상단 회원가입 > 회원정보에서 "MOU" 선택 > 연체 '국가보훈부' 선택 후 인증번호(1400) 입력 > 회원가입 완료 후 "패키지 예약" 진행
청풍리조트	충북 제천 소재(7.9평형 스탠다드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잔여 객실에 한해 협약요금으로 이용 가능 * 성수기, 연휴 등 예약 가능하나, 요금 별도문의	전화예약(☎ 043-640-7000)
주문진리조트	강원 강릉시 주문진 소재(10~19평형대 타입) * 비수기 평일 주중, 주말 * 성수기, 연휴기간은 요금 별도 문의	전화예약(☎ 033-661-7400)

* 예약번호, 고객센터 번호 등은 변경될 수 있으니, 이용 전 반드시 확인요망

▶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를 발급합니다

- 개인택시면허 신청은 지방자치단체별 공고문 요건에 따름
- 관할 보훈청에서 '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서'를 발급받아 첨부·신청
 - 개인택시면허 신청용 증명 발급은 독립유공자(수권 유족)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 중 (수권자가 자녀인 경우 제외 포함) 중 1인에게만 발급

▶ 건강과 문화생활을 여유롭게

- 시설 이용 시 국가보훈등록증을 제시하시면, 할인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.
 - 대상 : 독립유공자 및 그 배우자(애국지사님은 보호자 1인 포함), 수권 유족
 - 100% 감면시설 : 고궁 및 능원, 국·공립공원, 독립기념관, 전쟁기념관, 국·공립 박물관 및 미술관, 국·공립수목원, 국·공립 자연휴양림
 - 50% 할인시설 : 국·공립 공연장(대관공연 제외), 공공체육시설

▶ 세금감면 및 증명발급 수수료 면제 -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

구분	감면내용	감면방법
비과세종합저축 소득세 비과세	5천만원 이하 비과세종합저축 가입시 이자소득세 면제 (25.12.31. 전 가입시 직전 3개 연도 내 1회 이상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 제외)	국가보훈등록증 사본 또는 독립유공자(유족) 확인원 제출
주민등록 열람·교부수수료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, 지자체 제증명 수수료 인감증명 발급 및 변경신고 수수료 국내거소신고 사실증명 수수료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 수수료	면제	국가보훈등록증 제시

※ 비과세종합 저축은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5조에 해당하는 유가족까지 가입이 가능하며, 독립유공자(유족) 확인원 1부를 증빙자료로 제출

▶ TV 수신료 및 통신요금 등의 감면 - 애국지사 및 수권 유족

구분	감면내용	감면방법
TV 수신료 면제	·면제(월 2,500원)	KBS수신료콜센터(1588-1801) 또는 한전고객센터(123)으로 신청
전기요금 할인	·가정용 전기요금 월 1만6천원 한도 감액(하계(6. 1.~8. 31):월 2만원 한도)	한전고객센터(123)으로 신청
도시가스요금 감면	·난방용 동절기 72,000원 *적용 25.12.1~26.3.31. (이후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확인) 기타 월 9,900원 할인 ·취사용 월 1,680원 할인	해당 도시가스회사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, 주민등록등본, 도시가스 고지서를 첨부하여 신청서 제출
지역난방에너지 요금 감면	·월 5천원 감면(연1회 감면총액 일괄 소급 지급) ※한국지역난방공사 관할지역에 한함.	신청서 작성 후 한국지역난방공사 고객센터(1688-2488)에 팩스로 신청 (Fax. 031-705-4231, 4236)
전화요금 감면	·애국지사 : 시내·시외통화료 50% 할인(시외는 3만원 범위내) ·수권 유족 : 시내·시외통화료 30% 할인(시외는 3만원 범위내)	해당 전화국(통신사)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
이동 전화요금 감면	·가입비 면제 ·기본료, 사용료의 35% 할인	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
인터넷 통신요금 감면	·인터넷 통신요금 30% 할인	해당 통신사 지점에 국가보훈등록증 사본 제출
인천공항 Fast Track 서비스	·애국지사 본인(동반 3인 포함)	국가보훈등록증 제시
주차요금감면	·독립유공자 선순위 유족 서울시 운영공영주차장 50% 감면	국가보훈등록증 제시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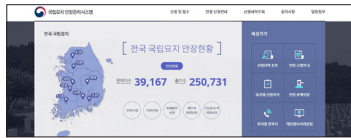
*전화, 이동전화, 인터넷의 경우 통신사에 따라 감면내용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통신사 문의 후 가입

애국지사님이 돌아가셨다면

▶ 먼저, 관할 보존(지)청 및 광복회(02-780-9661~2)에 연락주세요



1 국립묘지 안장 신청시스템 검색



2 본인인증 후 안장신청 클릭



3 묘지선택 후 신청

-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신 경우 보존청에 연락주시면,
- 대통령 및 국가보훈부장관 명의의 조화, 영구용 태극기를 근정합니다.
- 관할 보존청장 등 간부공무원이 조문하고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.
 - 사망조위금 지급 금액은?
 - 건국훈장 독립장 본인 1,000,000원
 - 애국 애족장 본인 500,000원
 - 포장·표창자 본인 300,000원
 - ※ 현지 조문이 불가능한 해외거주자 지급 제외
- 경찰 에스코트를 지원합니다.

▶ 국립묘지안장 희망시 인터넷으로 신청하세요

- 국립대전현충원(<http://www.ncms.go.kr>), 국립서울현충원(<http://www.snmb.mil.kr>)
- 신청 후 기다리시면, 안장심사 후 유족께 안장 대상여부를 알려드립니다.
 - 범죄경력이 없는 경우 1일 이내에 안장 대상여부가 통보됩니다. 다만, 범죄경력이 있는 경우 안장이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.
- 안장대상으로 통보 받으시면 안장식 일정을 국립묘지와 협의하여 정하시고, 구비서류도 함께 문의하여 준비하셔야 합니다.

▶ 배우자를 합장하려면...

- 배우자 합장은 유공자가 국립묘지에 안장이 확정된 경우에 가능하며,
 - 배우자가 먼저 돌아가신 경우에는 사설 묘지(납골당 등)에 모셨다가 유공자 안장 시 합장 신청
 - 애국지사 사후에 배우자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에 전화로 신청

· 국립대전현충원 (T. 042-820-7051) · 국립서울현충원 (T. 02-826-6238)
 ※ 국립서울현충원은 총혼당 납골 안치만 가능합니다.(국립연천현충원 '27년 준공 예정)

▶ 국립묘지 외 장소에 안장하고 싶어요

- 선산 등에 안장한 경우 묘비 설치 후 5년 이내 관할 보존청에 '묘비제작비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시거나, 봉안장·자연장 등 안장시설에 안장한 경우에는 안치 후 5년 이내에 관할 보존청에 '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신청서'를 제출하셔야 합니다.
- 제출서류 : 신청서, 비석 설치 사진(또는 안장시설 안치 사진), 세금계산서(또는 현금 영수증이나 카드전표 등의 증빙자료),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 사본
 - ※ 안장시설 사용료 지원은 '안장확인서' 추가로 필요하며 '23.1.1. 이후 사망자부터 지원 가능'
- 구비서류를 제출하시면 기당 100만원 범위 내에서 묘비제작비 또는 안장시설 사용에 소요된 실비를 유족의 통장으로 입금해 드립니다.
 - ※ 국립묘지 외의 장소에 안장된 경우에만 지원

▶ 독립유공자 묘소에 석물 설치 등 단장하고 싶으시다면?

- 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지 않는 묘소 중, 비석·상석 설치 등 묘소단장을 희망하시는 경우, 묘소 소재지 관할 보존청에 신청하시면 연간 묘소 단장계획에 따라 묘역 보수 및 석물 제작, 설치 등 우선 순위를 정하여 지원합니다.
 - 묘소단장비 지원금액 : 기당 200만원(국외 250만원)
- 묘소단장 내역
 - 묘역 보수 : 축대균열 또는 묘역일부 유실에 대한 보수공사, 잔디 이식 등
 - 석물 제작 : 비석·상석 설치, 봉분 돌레석 설치, 안내판 제작 등
 - ※ 독립유공자 산재묘소 유지·관리비 연간 기당 20만원 지원

국립묘지 이장을 희망하시는 경우

- 관할 보존(지)청에 유선 또는 방문으로 국립묘지 이장희망 신청을 하시면, 보존청에서 관련 서류를 안내드리고,
- 관련 서류를 보존청에 제출하시면, 향후 신청하신 대전현충원이나 서울현충원에서 이장 일정 등을 자세히 안내드립니다.
- 현충원의 심의를 거쳐 협의에 따라 국립묘지 안장이 완료되면, 보존(지)청에서 이장에 따른 이장비용을 유족의 통장으로 지급합니다.
 - 국립묘지 이장 시 지원금액은?
 - 기당 50만원입니다.(단, 묘소 단장지원을 받은 경우는 단장비 지원 후 3년 경과시 이장비 지급 가능)

▶ 먼저, 관할 보훈청에 사망신고를 하세요

-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시거나 선순위 유족 사망 시 반드시 관할 보훈청 보상과에 신고하셔야 합니다.
 - 관할 보훈(지)청에서 독립유공자의 가족관계(자녀, 손자녀)를 확인 후 승계절차에 대해 별도 안내드립니다.
 - 승계 순위 : 배우자 → 자녀 → 손자녀 → 자부(1945. 8. 14.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분)
 - * 관할 보훈(지)청에 사망신고 (전화) 하시면 공문으로 안내
 - 동순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순위는?
 - 유족간의 협의에 의하여 지정된 분 → 독립유공자를 주로 부양한 분 → 나이가 많은 분
 - * 보상금 대상 손자녀의 경우 생활정도가 어려운 분 우선
 - * 보상금 비대상 손자녀의 경우 선순위 자녀의 자녀 중 가장 나이가 많은 분
- 보훈(지)청에서 신원조회 후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하고 결정 안내문을 보내드립니다.
- 선순위 유족으로 결정 후 선순위 유족의 사진 1매(3.5X4.5cm, 6개월 이내 촬영 여권 사진 크기)와 신분증 지참하여 보훈(지)청에 직접 방문하시면 국가보훈등록증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.
-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시거나 보상금 지급대상인 유족 사망시에는 사망일시금을 지급합니다.
 - ※ 유족 사망시 다음 보상금 받은 유족이 없을 경우에만 지급
- 사망일시금 지급순위
 1.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신 경우 : 선순위 유족으로 지정된 자
 2. 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사망으로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
 - ①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 중 상속인
 - ② 사망 당시 생활을 같이하고 있던 친족이 없거나 유족이 없는 경우 장례 주관자 (장례입증서류제 출)
 - 사망일시금 지원금액
 - 애국지사께서 작고하신 경우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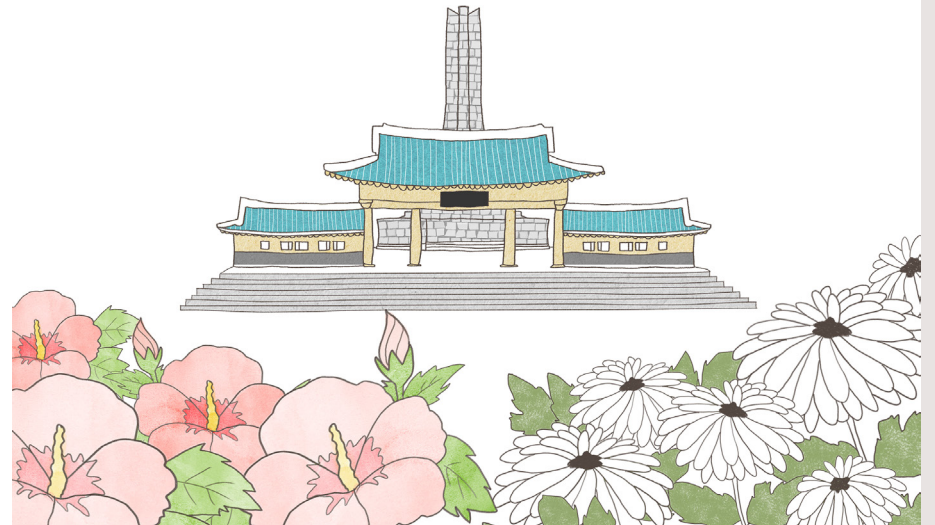
구분	건국훈장			건국포장	대통령표창
	1~3등급	4등급	5등급		
금 액(원)	3,268,000	3,208,000	1,704,000	1,208,000	1,127,000

보상금 지급대상 유족 사망으로 보상금 승계 유족이 없는 경우

구분	1~3등급 배우자	1~3등급 유족	4등급 유족	5등급 이하 기타 유족
금 액(원)	2,261,000	2,200,000	1,989,000	1,127,000

▶ 선순위 유족이 돌아가신 경우에도 사망조위금이 있다던데...

- 관할 보훈청에 직계 유족께서 사망진단서를 제출하신 경우, 사망조위금을 지급합니다.
 - 사망조위금 지급 금액은?
 - 건국훈장 수권 유족 사망시 : 300,000원
 - 건국포장·대통령표창 수권 유족 사망시 : 200,000원
 - * 현지조문 불가능한 해외거주자는 지급되지 않음.



전국 보훈청 관할구역 및 대표전화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서울지방보훈청	서울특별시 중구, 용산구, 성동구, 광진구, 마포구, 서대문구, 강동구, 송파구, 강서구, 양천구, 영등포구, 은평구	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6 (02)3785-0815
서울남부보훈지청	서울특별시 구로구, 금천구, 관악구, 동작구, 강남구, 서초구	서울 서초구 효령로 142 (02)3019-2300
서울북부보훈지청	서울특별시 종로구, 성북구, 동대문구, 중랑구, 도봉구, 강북구, 노원구	서울 도봉구 도봉로150나길 6 (02)944-9260
경기남부보훈지청	수원, 안양, 과천, 안산, 평택, 오산, 의왕, 군포, 시흥, 화성	경기 수원시 장안구 조원로 8 (031)259-1801
인천보훈지청	인천광역시, 부천, 광명, 김포	인천 미추홀구 석성로 239 (032)588-4100
경기북부보훈지청	의정부, 동두천, 구리, 고양, 남양주, 파주, 포천, 양주, 연천, 가평, 양평	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89 (031)843-5748
경기동부보훈지청	성남, 하남, 광주, 용인, 안성, 이천, 여주	경기 용인시 기흥구 구성로 124, 대경빌딩 3층(언남동) (031)289-2302
강원서부보훈지청	춘천, 원주, 화천, 양구, 홍천, 인제, 철원, 횡성	강원 춘천시 후석로440번길 64 (033)258-3609
강원동부보훈지청	강릉, 속초, 동해, 태백, 삼척, 고성, 양양, 정선, 평창, 영월	강원 강릉시 동해대로 3310 (033)610-0606
대전지방보훈청	대전광역시, 논산, 계룡, 금산, 부여	대전 서구 한밭대로 713 (042)280-1114
충남서부보훈지청	보령, 서산, 당진, 태안, 홍성, 예산, 청양, 서천	충남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(041)630-3700
충남동부보훈지청	세종특별자치시, 천안, 아산, 공주	충남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(041)589-4900
충북남부보훈지청	청주, 진천, 보은, 영동, 옥천	충북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(043)285-3213
충북북부보훈지청	충주, 제천, 단양, 음성, 괴산, 증평	충북 충주시 중원대로 3230 (043)841-8800

기관명	관할지역	주소·전화번호
대구지방보훈청	대구광역시, 상주, 김천, 구미, 경산, 성주, 칠곡, 고령, 군위, 청도	대구 달서구 화암로 301 (053)230-6010
경북북부보훈지청	안동, 영주, 문경, 봉화, 의성, 영양, 청송, 예천	경북 예천군 행복1길 5 (054)650-1400
경북남부보훈지청	경주, 포항, 영천, 영덕, 울진, 울릉	경북 경주시 금성로 355 (054)778-2600
부산지방보훈청	부산광역시	부산 중구 중앙대로148번길 13 (051)469-8991
울산보훈지청	울산광역시, 양산	울산 남구 대공원입구로 7 (052)228-6500
경남동부보훈지청	김해, 창원, 밀양, 거제, 창녕, 의령, 함안	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 제2부도로 10 (055)981-5600
경남서부보훈지청	진주, 사천, 통영, 남해, 하동, 고성, 함양, 거창, 합천, 산청	경남 진주시 월아산로 2082-5 (055)752-3881
광주지방보훈청	광주광역시, 나주, 담양, 장성, 화순, 강진, 장흥, 해남, 완도	광주 북구 침단과기로208번길 43 (062)975-6500
전남동부보훈지청	순천, 여수, 광양, 곡성, 구례, 보성, 고흥	전남 순천시 팔마2길 7 (061)720-3200
전남서부보훈지청	목포, 무안, 영광, 진도, 함평, 신안, 영암	전남 목포시 관해로 29 (061)273-0093
전북동부보훈지청	전주, 남원, 완주, 진안, 장수, 임실, 순창, 무주	전북 전주시 완산구 홍산남로 10 (063)239-4500
전북서부보훈지청	익산, 군산, 정읍, 김제, 부안, 고창	전북 익산시 선화로1길 58-5 (063)850-3702
제주특별자치도보훈청	제주특별자치도	제주 청사로 59, 3층 (064)710-8411

